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84
----------	---------

제출일자	2017. 10. 16.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제안 이유

군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 제기된 형사 또는 민사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소신 있는 업무 추진과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 공무원노조 요청사항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나.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에 법무법인 추가함(안 제2조)

○ 변호사 ⇒ 변호사 및 법무법인

다. 정당한 공무수행 중 제기된 민사 및 형사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방어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지원 대상·절차·액수·요건, 반납 기준

라. 용어순화 및 문장정비 함.(안 제2조·제3조·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 5백만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8.16.~9.0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6): 창원, 거제, 사천, 함안, 함양, 합천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 변호사의 운영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 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수행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3. 법령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5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을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은 별지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을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공무원 방어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사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변호(고문변호사 여부 가리지 않는다)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변호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사건의 경우 소제기 당시,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
2. 민사사건의 경우 청구포기, 각하 또는 기각으로 확정되었을 것
3. 형사사건

가. 불기소처분 될 경우에는 사유가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로 확정되었을 것
나.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무죄판결로 확정 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선임계약서 사본
3. 변호사선임료 지급 증명서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경우
2.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보험사 그 밖의 제3자로부터 방어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 변호사의 운영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국어대사전>고문: 어떤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직책. 또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예)고문 변호사 /재정 고문~ 제7조 신설사항인 공무원 소송비용지원 문구 추가함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 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에 법무법인을 명시함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3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수행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3. 법령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문장정비 등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은 별지 서식에 따른----- ----- 제6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범위----- ② (현행과 같음)	용어순화 용어순화
<신설>	제7조(공무원 방어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하여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변호(고문변호사 여부 가리지 않는다)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변호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규정 신설함. 지원여부 결정 절차 지원액수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사건의 경우 소제기 당시,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 2. 민사사건의 경우 청구포기, 각하 또는 기각으로 확정되었을 것 3. 형사사건 가. 불기소처분 될 경우에는 사유가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로 확정되었을 것 나.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무죄판결로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선임계약서 사본 3. 변호사선임료 지급 증명서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경우 2.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보험사 그 밖의 제3자로부터 방어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지원요건 지원신청서류 반납요건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7조(공무원 방어비용 지원):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사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변호비용으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산 5백만원으로 연 5천만원 이하에 해당

4. 작 성 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1996.2.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할 것이다.

□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 변호사의 운영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 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수행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3. 법령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공무원 방어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하여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변호(고문변호사 변호 포함)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변호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사건의 경우 소제기 당시,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
2. 민사사건의 경우 청구포기, 각하 또는 기각으로 확정되었을 것
3. 형사사건

가. 불기소처분 될 경우에는 사유가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로 확정되었을 것
나.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무죄판결로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선임계약서 사본
3. 변호사선임료 지급 증명서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경우
 2.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보험사 그 밖의 제3자로부터 방어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